
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요건 충족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연락처

가입신청 금융기관	계좌번호	계좌개설일
--------------	------	-------

국세청장 통보내용

의견내용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주소지 관할) **세무서장**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의견서는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국세청으로부터 가입요건 충족 여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